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서형석(6535)/ E-mail: kma_sh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89-02406호

시행일자 2022. 5. 3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 조사 안내 요청 (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5606(2022.5.31.)

3.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지자체를 통해 실시되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안내 협조 요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개요

- 기존 코로나19 검사, 치료기관(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, 외래진료센터)을 (가칭)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및 통합·정비하여, 확진자 대면진료 대응을 강화하고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함.
- 통합 후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, 외래진료센터는 지정해지 예정,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리 필요로 지속

○ 통합·정비 방안

- (가칭)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유형

구분	기능	
	공통	차이
코로나형 (검사+진단+치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 ■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기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코로나 질환 대면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비코로나 질환 치료 가능 ■ (고위험군 패스트트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사→ 진료→ 먹는 치료제 처방 → (필요시) 입원 연계
비코로나형 (확진자 치료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비(非)코로나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실시 (고위험군 패스트트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치과, 한의과는 비코로나형만 가능

- 시설·인력 기준(요건)

구분	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요건
시설기준	1)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가능한 기관 2) 감염관리 장비 구비, 소독·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
인력기준	1)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 1명 이상 상근 -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, 가정의학과, 소아청소년과, 이비인후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- 코로나19 진단검사(PCR·전문가용 RAT)의 경우, 코로나19 관련 질환 진료 및 먹는약(치료제) 처방 위해 의사(의과)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- 비 코로나19 관련 질환 및 처치(골절, 외상, 치과진료, 한방진료 등)의 경우는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2) 간호인력(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) 1명 이상 상근 3) 진료보조*, 행정,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* 환자 분류, 체온측정,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를 담당, 간호인력이 겸임 가능

○ 수요조사[(가칭)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방법]

- 기간 : 2022. 5. 30.(월) ~ 2022. 6. 10.(금)

- 신청방법 : 붙임1의 서식[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서(수요조사용)]를 작성하여 지자체 제출

① 호흡기전담클리닉 : 자동전환(시설·인력기준 충족하며, 예산(국비)지원으로 감염시설 확보)

②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, 외래진료센터 : 시설·인력기준 충족시 신청에 따른 지정가능

(단, 외래진료센터 중 예산(국비)지원으로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참여)

- 이번 수요조사 시 각 지자체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'호흡기환자 진료센터' 운영 시작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지정 예정

※ 시행시기, 취소·변경, 추가 지정신청 및 지정은 별도 공문 등을 통해 6~7월 중 안내 예정

- 단,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관은 신청 취소 가능(단,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예산으로 시설 지원된 경우는 제외)

※ (가칭)호흡기환자 진료센터 관련 운영 및 변경점은 붙임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

1.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.

2. 코로나19 관련 검사·치료기관 통합·정비 계획(안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